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  
번호

274

제출년월일 : 1997.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정이유

'96. 4. 1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도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를 명확히하여  
소비자보호행정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소비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역할 및 도지사의 의무 등을 명시함 (안 제1조~제5조)
-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물품의 제공금지, 위해 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의 의무규정을 정함 (안 제6조~제8조)
-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금지토록 함 (안 제9조~제10조)
-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표시·광고·계량·규격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제14조)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 시군등에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제19조)
-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과 소비자 단체의 등록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제22조)
-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3조~제30조)
- 사업자가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문제의 영업활동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 (안 제31조~제33조)
-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4조)
- 그동안 운영해 오던『충청북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본 조례에 통합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부칙)

□ 조례(안) : 따로붙임

□ 관련법령 발췌문 : 따로붙임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이하 “도”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용어정의는 소비자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사회 정착을 위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를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의무) 도지사는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작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과 제공

##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 제1절 위해의 방지

제6조(위해물품등 제공금지)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해물품의 회수등)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을 회수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

제9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시정권고) 도지사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3절 표시·광고·계량·규격의 적정화

제11조(표시의 적정화) 도지사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의 적정화)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량의 적정화)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의 적정화) 도지사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규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절 소비자피해의 구제

- 제15조(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군·출장소 등에 소비자피해구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 기구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피해구제의 처리) ①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교환, 환불, 수리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처리절차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피해구제기준)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관련 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다.

제19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도지사·시장·군수·출장소장은 소비자피해 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등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20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등을 홍보하고,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지급) ①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절차, 방법 등은 충청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조례,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보호 관련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및 도의회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 참석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보 칙

제31조(의견청취 · 검사 · 자료제출요구)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권고) ①도지사는 이조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내용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공표) ①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557호, '87.

9. 4)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